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유슬기[6593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8812호

시행일자 2025. 11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4호(2025. 11. 18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- 가.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 제4항부터제6항)
나. 혁신의료기술의 과정관리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혁신위원회를 추가함 (안 제7조제1항)

첨부

- 1) 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 +일부개정_발령.HWPX
- 2) 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 +일부개정_발령.PDF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 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